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 293p 번호 : 3	해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준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규정은 헌법 및 보안관찰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 여부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는 점 등에서 보안관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적절한 수단이며, 신고의무의 내용 및 신고기간, 처벌내용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7.19. 2000헌바22).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기준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규정은 대상자에게 보안관찰처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보안관찰처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재범에 대한 위험성 심사도 없이 무기한으로 과도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반할 경우 피보안관찰자와 동일한 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따라서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21.6.24. 2017헌바479).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